

## II. 生産物賠償責任法과 關聯保險制度

### 1. 生産物賠償責任法の 意義

生産物賠償責任(product liability)이라 함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缺陷(defects)으로 인하여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가 생명·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자(제조업자, 판매자, 수입업자등)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生産物の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生産物賠償責任制度는 산업화에 따른 消費者 被害를 구제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탄생되었다. 현대의 産業社會에서는 高度의 科學技術을 활용한 제품이 大量生産되고 복잡한 유통형태를 거쳐 소비되므로 생산물배상책임에 충분하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商品을 판매하는 자인 賣渡人에게 缺陷商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생활의 안전은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商品을 設計, 製造하는 製造者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결함상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지 아니한 소비자는 종종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法制의 整備, 去來慣行의 개선, 홍보,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여전히 증가일로에 있는데, 미국의 경우 생산물배상책임소송을 포함한 不法行爲費用(tort cost)이 1994년도 기준으로 1,520억달러에 달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유럽국가나 일본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sup>3)</sup>

<表 II-1> 주요국가별 불법행위비용(Tort Cost)의 GDP에 대한 비율

국가별	1980	1990	국가별	1980	1990
미국	1.55	2.33	호주	0.6	0.9
이탈리아	0.9	1.3	프랑스	1.1	0.9
벨기에	1.3	1.2	캐나다	0.7	0.9
독일	1.2	1.2	일본	0.7	0.7
스페인	0.5	1.0	영국	0.5	0.6
스위스	0.8	1.0	덴마크	0.4	0.4

자료 : Tillinghast, Insurance Pocket Book 1995, NTC Publication Ltd,p.175

이처럼 결합상품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합상품으로부터 발생한 損害賠償責任을 제조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生産物責任精神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생산물배상책임은 그 적용대상, 그리고 책임의 근거법리 등에서 그 영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생산물배상책임의 인정 내지는 입법화가 세계적인 경향이 되고 상품의 국제적인 교역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수입국에 따라 동일 제품에 대한 책임부담법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국의 생산물배상책임법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 2. 生産物賠償責任法理의 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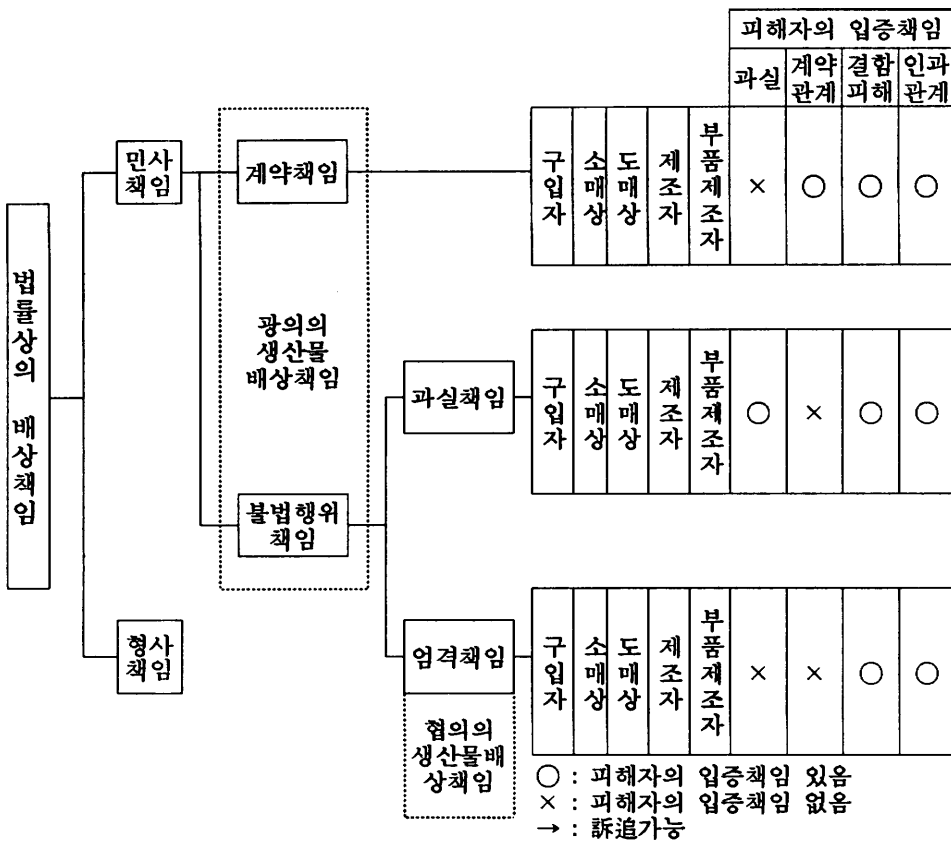
### 가. 生産物賠償責任法理

生産物賠償責任法理는 19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상품의 大量生産, 大量販賣 및 大量消費時代에 접어들면서 생산물배상책임사고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判例에 의한 하

3) Ruth Gastel, *Insurance Issues Update : The Liability System*,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New York, 1996. 5.

나의 法理體系로 발전된 것으로서 세계 각국의 법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理는 통일된 聯邦法은 없으며, 州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책임법리는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으로, 실제 生産物배상책임소송에서는 이들을 병행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圖 II-1> 生産物배상책임의 법적 구조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 및 소송사례」 국제90-12, 1990. 5.

### 1)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

산업혁명 직후에는 資本主義經濟의 확립과 産業保護에 대한 국가적인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또한 개인의 활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제품의 瑕疵 또는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1842년 영국의 우마차사건 판례<sup>4)</sup>에도 나타나 있는데 제품에 대한 과실이 제조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기와 직접적인 契約關係 (privity of contract)가 없는 소비자나 이용자에게는 民事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용하여 왔다. 그 후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칙은 사람의 안전에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inherently dangerous)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것(imminently dangerous)”에 한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 예외는 독약을 비롯하여 모발세제, 총기, 폭발물 등에 한정되었으며 자동차의 경우는 1916년 Macpherson v. Buick Motor Co.사건<sup>5)</sup>을 시초로 제조자의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과실책임은 제조업자 등이 主義務를 위반하여 결합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말한다. 피해자가 제조자에게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제조업자의 주의의 무위반<sup>6)</sup>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도의 과학기술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

- 
- 4) 우마차사건(Winter Bottom v. Wright, 1842)에서 피고가 우정장관과 우편물운송용마차의 공급·검사·수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가 공급한 마차의 하자로 인하여 마차의 운행중 마차가 전복하여 마부(원고)가 부상당하였는 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임. 권용우, 「불법행위론」, 고시원, 1974, p.274
  - 5) 1916년 미국에서 제3자가 납품한 차륜을 부착한 자동차의 차륜이 이탈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모든 제품의 제조자는 계약당사자관계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이후 제조자의 과실책임법리가 확립된 사건임.
  - 6) 주의의무는 안전한 설계(duty of a safe design), 안전한 제조·조립·포장(duty of safely manufacture, construct, assemble and package), 시험과 검사(duty of test and inspection), 지시와 경고(duty of instruct and warn)로 분류한다.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평성의 측면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환하여 제조업자가 제품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케 하거나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sup>7)</sup>

## 2)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

일반적으로 過失責任法理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제조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損害賠償責任이 없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결함제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반면 소비자는 그로 인한 피해를 부담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과실책임법리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保證責任法理(warranty liability)가 도입되었다.

보증책임은 商品의 賣買에 있어서 제조자·판매자 등의 賣渡人이 그 상품의 品質에 대해 明示的 또는 默示的인 保證을 하였으나 그 상품이 보증내용에 反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 등의 買受人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보증위반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無過失責任(no fault liability)이다. 이는 피해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과실책임보다 피해자측에 유리한 면이 있다. 보증책임에는 견본,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라벨 등에 의해 인정되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sup>8)</sup>과 제품 그 자체의 일정품질이나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한 默示的 保證(implied warranty)<sup>9)</sup>이 있다.

7) 입증책임 완화이론으로서 사실추정의 법칙(res ipsa loquitur), 당연과실이론(negligence per se)이 있다. 사실추정의 법칙은 일정요건하에서 사고발생 그 자체로부터 과실을 추정하는 법리(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1944 참조)이며, 당연과실이론은 제품마다 정하여진 안전규칙위반 등의 사실로부터 제조업자의 과실을 추정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이론임.

8) 1932년 Baxtor v. Rord 사건에서 제조자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자동차 앞유리에 대한 선전·광고를 신뢰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원고가 그 자동차의 주행 중 작은 돌로 유리창이 파손, 실명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당사자간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더라도 제조업자의 명시보증위반에 의한 책임을 부담케 함.

9) 1960년 Henningsen v. Bloomfield Motors사건은 묵시보증책임에서 계약관계요건을 폐지한 판례로 알려지고 있음. 즉 피해자는 판매업자를 통하여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의 처로서 제조자와

### 3) 不法行爲法上の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s)

#### 가) 법리의 배경

1963년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사건<sup>10)</sup>에 의거 법리가 확립된 엄격책임은 보증책임이론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피해자가 제품의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제조자는 그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에 따라 嚴格責任을 일명 缺陷責任(defects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즉, 전통적인 過失責任法理에서는 피해자가 결함있는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大量生産體制를 갖춘 複合産業構造上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엄격책임법리하에서는 피해자가 “製品の 缺陷有無(缺陷의 存在)”와 “그 缺陷에 따른 被害發生과의 因果關係의 存在”를 입증하면 제품을 제조, 판매한 자는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모든 생산물(any products)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제조업자 등에게 엄격책임법리를 부과하는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① 제조자 등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제어하기가 쉬운 지위에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다 ③ 제조업자 등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도 이를 제품가격인상이나 보험에 부보함으로써 다른 소비자에게 분산시킬 수 있다 ④제조업자의 품질관리나 안전관리능력을 증가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 나) 결함의 유형

---

의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었으나 재판부는 상품의 묵시적보증은 직접 구입자 이외의 가족, 기타 이용자에게도 미친다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 10) 캘리포니아주법원은 Shopsmith라는 동력기에 의한 신체상해사고소송에서 피해자가 동산매매법에서 정한 소정의 기간내에 보증위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제조업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제조업자에게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함.

생산물의 결함은 미국의 Restatement of Torts<sup>11)</sup> 402조에 의하면 “제품의 이용자,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것(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to his property)”이라고 규정되어 있다.<sup>12)</sup> 생산물의 결함유형과 발생요인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수 있으며 결함유형에 따라 책임부담법리는 달라진다.

<表 II-2> 제품결함의 분류 및 발생요인

결함구분		발생요인
제품자체 결함	설계상의 결함	-안전설계의 미비(예상오용에 대한 대비도 포함) -안전,기술기준에 불합격 -안전장치의 불비, 중요안전부품의 내구성부족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품질관리 불량에 의한 안전장치의 고장 -검사오류에 의한 재료부품의 결함,조립불량 -원재료의 불량, 원료혼입실수 -수송, 포장, 보관상의 불비
경고표시상의 결함	취급설명서 및 경고라벨	-경고사항의 탈루, 불충분, 예견가능한 오사용방지의 경고내용미비 -명시보증위반 -경고라벨위치, 부착불량
	광고·선전, 카탈로그, 영업사원의설명 등의 표시	-품질,특성의 중요한 불성실표시(사기적, 과실이 아닌 것도 포함) -명시적 보증위반

設計上の 缺陷(design defect)은 생산물의 설계 과정상에 내재된 결함을 말하며 생산물의 安全性, 效用性, 價格을 기초로 하여 생산자의 계획 또는 의식적 선택의 결과로써

11) Restatement of The Law-Second Torts는 美國法律家協會가 過去の 判例를 集大成하여 條文의 形式으로 整理하여 註釋을 단 것으로 法律은 아니지만 큰 影響力을 가지고 있다.

12)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Internation Product liability*, Lloyd's of London Press Ltd, 1993, p.568

발생한다. 또한 결함있는 설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된 경우 모든 생산물에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고 일부 생산물에만 결함이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설계의 결함여부를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에 근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차충돌(second collision) 혹은 내충돌성(crashworthiness)”이는 설계결함의 판단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3)</sup>

製造上の 缺陷(construction or manufacturing defect)은 생산물의 제조과정에서 생기는 결함으로 설계와 실제로 다른 생산물이 제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함없는 설계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었으나 사용된 원료, 부품 등에 결함이 있거나 가공, 조립과정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결함제품이 생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단계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적으며 대부분 품질검사시에 발견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警告上の 缺陷(defect attribute to the absence of failure to warn)은 생산물의 설계나 제조상에는 결함이 없었으나 그 생산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적절한 警告(warn)나 指示(instruction)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인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제품의 경우 사용상의 경고를 懈怠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된다.

## 나. 生産物賠償責任訴訟의 防禦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生産物賠償責任法에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嚴格責任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조자에게도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에

---

13) Larsen v. General Motors Co.,(1968)사건에서 제조자는 예견가능한 용법(foreseeable use)에 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제조물을 설계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자동차의 2차충돌에 대하여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음. 이 판례에 따라 대부분의 주가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웨스트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만 인정치 않고 있음. 安全總合研究所, 「生産物賠償責任」, 東京:有斐閣, 1989, p.64



따라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生産物賠償責任法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실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생산물배상 책임법의 母胎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제조업자의 법률상 방어대책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1) 寄與過失(contributory negligence)

寄與過失은 결합생산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자인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리이다. 따라서 이 법리는 過失責任(negligence liability)에만 적용되며 保證責任(warranty liability)과 嚴格責任(strict liability)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3년 현재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알라바마주, 콜롬비아주, 매릴랜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버지니아주이다.

### 2) 比較過失(comparative negligence or fault)

比較過失은 가해자와 피해자 양당사자에게 과실이 있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이를 contributory negligence(Consumer Protect Act 1987, section 6(4))라 하는데, 독일 등 대륙법계의 過失相計와 같은 개념이다. 비교과실은 過失比率의 適用方法에 따라 크게 純粹比較過失(pure comparative negligence)과 修正比較過失(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로 분류된다.

일명 미시시피규칙(Mississippi Rule)<sup>15)</sup>이라고도 하는 純粹比較過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이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경감되는 제도로 알라스카주, 아리조나주, 플로리다주, 켄터키주, 루지애나주, 미시칸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워싱턴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14) Dennis Campbell, Christian Campbel, *op. cit.*, pp.578-585

15) 이는 1908년 미시시피주에서 Federal Employer's Liability Act에 최초로 채택한 것에 연유한다. Larry D. Gaunt 외 3인, *Commercial Liability Underwriting Vol I*, Insurance Institute of America, 1990, p.102

水晶比較過失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해자의 일정수준과 같거나 적을 때 가해자에게 배상액 전액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예 The 49% Type Rule , The 50% Type Rule)과 피해자의 과실이 가해자의 과실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전액보상하도록 하는 방법(Slight/Gross Type Rule)으로 분류된다. 前者의 방법은 알라스카주, 콜로라도주 등 20개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後者는 네브라스카주와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表 II-3> 비교과실을 적용한 경우 손해배상액(배상액 100달러인 경우)  
(단위 : %, 달러)

피해자 과실비율	순수 비교과실	수정비교과실			기여과실
		50% Rule	49% Rule	S/G Rule	
10%	90	90	90	90	0
49%	51	51	51	0	0
50%	50	50	0	0	0
51%	49	0	0	0	0
90%	10	0	0	0	0

比較過失이 保證責任과 嚴格責任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이는 보증책임과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보증책임에 대한 적용은 알라스카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의 경우 판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인디애나주와 텍사스주는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엄격책임에 대한 적용은 엄격책임이 생산물의 결함 그 자체를 책임부담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인정하는 주도 있다. 영국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비교과실이라는 용어대신 比較責任(comparative fault)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危險引受(assumption of risk)

危險引受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감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각국의 책임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過失責任法理를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해자의 위험인수를 부정하고 있으나 寄與過失을 채택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엄격책임법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4) 開發途上의 危險(development risk)

開發途上의 위험이란 제품의 유통개시 시점에서의 科學技術水準(state of the art)으로 그 제품의 결함발견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즉, 제품이 그 시대 산업계의 보편적인 설계나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 후 사고를 예방할 만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가 제조한 상품이 유통되기 이전 즉, 생산자의 점유를 벗어나기 전까지의 생산자의 기술수준정도(state of the art)에 부합하는 검사, 시험 등의 제반 조치를 함으로써 결함상태를 발견하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비록 그 후에 생산물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해도 생산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동 이론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바탕은 제조자에게 개발도상의 위험을 부담케 하는 경우 製品의 開發 및 技術革新은 정지될 것이고, 제조자가 賠償責任負擔能力 이상의 賠償義務를 부담하게 되어 被害者 救濟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EC의 生産物指針도 開發途上의 위험을 免責으로 규정하되 가맹국에 따라 면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룩셈부르크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맹국이 면책으로 하고 있다. 최근 입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 5) 責任期間

생산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책임기간에는 消滅時效와 法定責任期間이 있다. 消滅時效(state of limitation)란 피해자가 사고발생일 또는 사고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행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消滅時效期間을 보통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는 신체의 상해와 사망, 재물사고에 대하여 보통 1年~6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別·州別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sup>16)</sup>

또한 法定責任期間(statute of repose)은 생산물이 유통된 후 일정기간내의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제조업자로 하여금 반영구적인 책임부담을 면하게 하는 기한제한이다.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10年, 미국의 경우에는 보통 4年~12年으로 州마다 相異하다.

### 3. 生産物賠償責任關聯 保險制度

#### 가. 生産物賠償責任對策

生産物賠償責任法이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는 예전보다 손쉽게 제조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게 되므로 기업들은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발생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그 손해를 輕減시킬 수 있는 生産物責任對策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生産物責任對策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가 中心이 되며 이에는 製品安全對策인 PS(Product Safety)와 防禦對策인 PLD(Product Liability Defence)가 있다. PLP는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책임만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제품회수나 기업 이미지<sup>17)</sup>의 低下에 따른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전체 손실의 豫防·防止 및 損害輕減對

16) 알라바마주의 경우 인체상해 1년, 사망과 재물사고 2년으로 되어 있다. 大羽寫一, 「米國の生産物賠償責任と懲罰賠償」, 日本經濟新聞社, 1991, pp.188-189참조

17) 1982년 결함이 있는 Tylenol로 인하여 Johnson & Johnson사는 소송제기전에 자발적으로 1억달러의 비용으로 회수를 하고 아울러 생산라인의 변경 및 재설계비용으로 1억5천만달러를 지출하였으며 기업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텔레비전광고비용 백만달러를 지출한바 있다. 동기업은 이와 같은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다른기업과는 달리 장기간의 기업이미지손상은 되지 않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http://www.marketingtools.com/ad.current/AD765.htm>("Pro

策까지 포함한다. PS(Product Safety)는 製品安全對策으로 제품자체의 安全設計만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취급설명서나 제품본체에 부착된 경고라벨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는 제품전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행하는 모든 사전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제품의 기획·개발에서 설계, 제조, 판매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미치는 기술적인 대응이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설계단계가 최대 문제로 되고 있다. PLD(Product Liability Defence)는 결함생산물로 인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부담, 제품회수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이미지손상 등 類型的·無形的 損害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결함생산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대책을 말한다. 따라서 PLD는 사고발생시 가능한 한 생산물책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도록 소송방어대책, 제품회수 대책,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등이 중심을 이룬다.

#### 나. 保險制度

生産物의 缺陷 등 瑕疵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체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넓게는 제3자에 대한 賠償責任損害(third party liability)와 기업체의 自體損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表 II-4> 생산물책임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 유형

손해구분		손해유형
직접적인 손해	배상금	인적손해, 재산손해
	분쟁해결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기타비용
간접적인 손해	경제적손실	제품회수등 사후조치비용, 이익의 상실 등 휴업손해
	비경제적손실	소비자의 신뢰저하, 노동의욕의 감퇴 등

duct Liability", American Demographics, June 1995)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때문에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입힌 身體障害(bodily injury) 및 財物損害(property damages)를 말하며, 제조업자의 자체손실은 제품의 品質不良으로 인한 손해, 제품의 性能이나 機能低下가 다른 제품에 미친 손해, 제품의 使用不能으로 인한 손해, 製品自體의 손해, 缺陷製品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에 소요된 費用損害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前者의 손해는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 liability insurance)에서 담보하며, 後者は 生産物回收保險(product recall insurance) 또는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Policy)에서 담보한다.

<表 II-5> 生産物결함관련보험

보험종류 \ 담보손해	生産物자체의 수리, 교환비용		生産物의 회수비용	제3자에 대한 신체, 재물손해배상 책임(TPL)	TPL에 기인한 휴업손해
生産物배상책임보험	×		×	○	○
生産物보증배상책임보험	○	×(회수)	×	×	×
生産物회수비용보험	△(회수에 한정)		○	×	×

자료 : 보험개발원, 「生産物회수비용보험」, 1995.2, pp.8

### 1) 生産物賠償責任保險

生産物賠償責任保險(products liability insurance 혹은 products completed operation liability insurance)은 生産物危險(products hazard) 또는 完成品危險(completed operations hazard)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legal liability)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여기서 生産物위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의미하며 完成品위험은 피보험자가 행한 업무의 결과에 기인하여 업무의 종료 후에 일어난 사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法律上の損害賠償金, 損害의 防止・輕減費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保險會社 協力費用, 피보험자가 지급한 訴訟費用, 辯護士 費用, 仲裁・和解 또는 調整에 관한 費用,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供託保證保險料 등이다. 그러나 계약상 가중된 賠償責任(contractual liability), 水質汚染・土地汚染・大氣汚染 등 일체의 環境汚染(environmental risks)에 대한 배상책임 및 汚染除去費用,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의 性質 또는 瑕疵에 의한 생산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결함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 2) 生産物回收費用保險

生産物回收費用保險(products recall insurance)은 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용자등 제3자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러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 검사, 수리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다. 담보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회수제품의 缺陷有無檢査費用, 回收製品의 修理費用, 대체품의 제조원가, 회수제품 또는 대체품의 수송비용등 회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과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매체에 대한 광고비용, 전화, 팩스, 우편 등의 통신비용 등 회수부대비용이다.

## 3) 生産物保證賠償責任保險

생산물의 인도 후, 保證期間內에 발견된 瑕疵로 인하여 생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 고장 또는 기능의 불능 등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는 그 제품에 대한 보증책임이 발생한다. 생산물보증배상책임보험(product guarantee legal liability insurance)은 제조업자

가 당해 생산물을 직접 보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또는 손해배상금 등의 보증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즉, 전술한 生産物賠償責任保險의 면책사유 중의 하나인 생산물자체의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